

운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운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운담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 【학생의 권리보장 원칙】

-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 ③ 운담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 제2장 학생의 인권에 명시된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본 규정 2장 및 조례를 참조한다.

제6조 【교육 3주체의 책무】 운담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⑥ 학부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 ⑦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7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7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8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

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1호) 또는 지정된 위치(2호)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수업 시간 내 일부)	-지정된 좌석 또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수업 시간 내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분리 시간은 조절 가능)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자치실,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수업 종료 시 또는 문제해결 시까지)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부재시 공강인 교사)이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쓰기, 교과서 요약 등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학생자치실 등 지정 장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문제 해결시까지)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장(부재시 교감)이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p>-학년·학급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 시간, 방법 등을 교사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음.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 1~2호: 수업 교사 / 3호~4호: 학생을 인계한 교사</p>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 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내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휴기, 라이터, 레이저 등)	3일	교무실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NEIS 학생관찰 누가기록란에 입력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4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8조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 ① 같은 학년 및 위·아래 학년 사이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 사이에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한다.
- ② 같은 학년 또는 아래 학년 학생에게는 이름으로 부르고, 위 학년 학생에게는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으로 부르거나 이름을 덧붙여 부를 수 있다.
- ③ 상대방이 좋아하는 별명으로 부를 수 있으며, 싫어하는 별명은 부르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⑤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양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제19조 【성평등】

- ① 모든 학생은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 ② 서로 사귀는 때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 ③ 학교 내에서 서로 사귀는 학생끼리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2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1항에 적힌 내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제1항에 적힌 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폭력예방】

- ①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학교 안과 밖 또는 사이버 공간 등에서 폭력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거나 발생했을 때, 가까이 있는 교사, 학부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다른 사람의 생각, 몸,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실천한다.

제22조 【학생 안전】

- ① 학생은 학교의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

- ②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장난 또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복도와 계단은 되도록 걸어서 이동한다.
- ⑤ 사람이 많은 곳은 차례를 지키며 질서 있게 행동한다.

제23조 【학습권 보호 및 수업 태도】

- ① 모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자신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및 다른 학년의 학습권도 소중히 생각한다.
- ③ 수업 시간이 되면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 ⑤ 어려운 것이 있어도 도전해보는 태도를 갖는다.

제24조 【휴식 시간】

- ① 학생은 학교의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 ② 쉬는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③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체육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특별실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제25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머리카락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③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 ①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 ② 성냥,ライター,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③ 도박에 관련된 물건
- ④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 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

제27조 【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남학생은 남교사, 여학생은 여교사가 실시하고,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흥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물건의 수거】

-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말, 행동, 생각 등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 행동,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이 자유롭게 말, 행동, 생각 등을 표현할 때 학교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자치회 게시판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④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학생 게시판에 학교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의 글이 있을 때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약속 등에 따라 그 글을 쓴 사람이 스스로 없애도록 안내한 후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없애거나 치울 수 있다.

제31조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② 학생은 방과 후에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실 또는 자치회실에서 학습 및 건전한 취미 활동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통학버스 및 체험학습 버스 안에서 긴급한 연락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로 게임, 유튜브 시청, 음악 듣기 등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목소리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퍼트려서는 안 된다.

제32조 【자치활동】

- ① 학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원하는 학생들끼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들 수 있다.
- ⑤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와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시설 이용과 환경】

- ① 특별실(컴퓨터실, 체육실, 도서관 등) 및 각종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낙서를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사용한 후에는 항상 다음 사람을 위해 각종 교구를 제자리에 정리한다.

제34조 【징계 사실의 알림 금지】

- ① 학교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학교 전체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
- ② 학교는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교사에게 학생의 징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5조 【학교 밖 생활】

- ① 운담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바른 말을 사용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통 규칙,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위험한 곳이나 학생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밖에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탈 때, 가능하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타도록 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6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8조 【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0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1조 【구성】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3조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4조 【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 【간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 【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 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8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결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

나.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및 확인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9조 【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를 합하여 5회 이상인 학생	○	○	○	○
2	미인정결석이 3일 이상인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
5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7	학교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이나 행위를 한 학생	○	○	○	○
8	교원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10	도박을 한 학생		○	○	○
11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13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14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15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6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7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18	제4장 학생생활에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주의를 주었음에도 해당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제50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52조 【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40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5조 【심의절차 및 조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56조 【선도 내용의 통지】

-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8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9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규정 제·개정 방법

제60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 【적용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3조 【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64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⑤ 학교장

제66조 【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67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6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2023년 12월 21일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기타사항】 이 개정은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